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 - 1004

시행일자 1995. 7. 10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김영 / 1	
기획관리실장	전철		
법무 담당관	신		
법제처장	복		
기안	이종범		

제목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훈령 제 82 호

(제 2 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2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청소사업본부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5. 7. 15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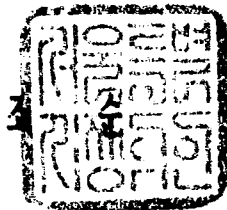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에도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종전 관행에 따라 수고비를 요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잔존함에 따라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쇄신 대책을 수립, 잘못된 관행을 조기에 개선시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골자

환경미화원징계처분기준중 금품수수 관련행위 처분기준강화(안 별표)

- 텀 요구행위 → 금품요구행위

1회 : 정직1일 → 정직2일, 2회 : 정직2일 → 정직3일

3회 : 정직3일 → 정직5일, 4회 : 해 고 → 해 고

-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하는 행위

1회 : 정직3일 → 정직5일, 2회 : 해 고 → 해 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결과 의견반영

서울특별시환경 제8기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환경미화원징계처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환경미화원징계처분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해고	
		주의	경고	징						적
				1일	2일	3일	4일	5일		
발생시	형사입건으로 기소 되어 금고이상의 형화징자								1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자								1회	
	조장동의 재도를 임 의로 만드는자								1회	
월 단 위	지 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폐기물을 합수구, 빗 물받이에 무단투기 하는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품 위 손 상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수거기피 및 정일수 거 불이행(누계)		1회	2회	3회	4회			5회	
	무 계 결 근		1회	2회	3회	4회			5회	
	복 장 위 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년 단 위	근 무 태 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근 무 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도 급 행 위		1회	2회	3회	4회			5회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주의	경고	정 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년 단 위	금 품 요 구 행 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중 주민들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1회	2회			3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하는 행위							1회	2회
	잔기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처분등의 기준	<p>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주의처분 년 16회이상 : 해고 나. 경고처분 년 8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이상 : 해고</p> <p>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주의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경고 1회,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p> <p>3. "년", "월"은 통상사용 력을 기준으로 한다.</p>								